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1. 기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가. 제1기

-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 ③ 외국인의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 ④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나. 제2기

- ①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②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2.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소액심판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법원 내·외부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2021. 5. 24.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 이유 부기재로 인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므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쟁점이 복잡하고 다투는 사건의 경우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권고할 필요 있음
 - 2021. 6. 14. 언론 보도 「3,000만 원이 소액? 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 2021. 7. 2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원칙적으로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 2021. 8. 31. 국회의원실 주관 토론회 「소액사건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 국민들이 법원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소액심판제도를 충실화하여 사법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수의 소액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연도별 평균 처리 기간(2015년 ~ 2019년)

	처리	심급 (단위 : 일)		
		합의	단독	소액
2015년	처리계	284.9	174.6	119.1
	판결	329.7	187.1	134.2
	기타	205.7	153.7	94.3
2016년	처리계	322.3	187.5	116.9
	판결	378.9	205.7	131.8
	기타	219.1	161.2	91.7
2017년	처리계	293.3	204.3	120.4
	판결	348.3	227.3	136.4
	기타	188.8	172.3	91.8
2018년	처리계	297.1	210.1	119.4
	판결	351.8	238.1	136.4
	기타	195.6	172.0	90.8
2019년	처리계	298.3	211.1	134.8
	판결	347.1	237.5	160.3
	기타	207.0	172.2	94.5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소액사건 최고액 변천 경과

규칙 공포일자	1981. 6. 23.	1983. 7. 9.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17. 1. 1.
최고가액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 2017. 1.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배포한 당시 보도자료 내용

2017년 「소액재판실무편람」을 전면 개정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판결서의 이유에 ① 주문에 인용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의 판단 요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①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 ②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소액재판실무편람 개정 이후, 구체적인 추진 내역은 없음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소액판결서의 이유 기재 관련

- 판결서의 응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이유불기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이유 기재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

- 이유 기재의 효율화 방식 고안(사건 유형에 따른 권고적 방식 마련, 개조식, 체크 형식 등 고안)

●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소액사건 처리 방안

- 금융기관 소액 공시송달 사건, 보험회사 간 구상금 사건 등 일부 유형별 소액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 마련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대상 기관 확대 필요성 검토

● 소액사건 조정 활성화 방안

- 시니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의 확대 시행 검토
- 소액사건 유형별 조정전치적 운영 검토
-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 조정 활성화 방안 검토

②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검증과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검증과 감정 결과가 사실 관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검증과 감정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과 감정이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확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법원 내·외부에서 여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검증 관련하여 현장검증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검증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개진되어 왔음
 - 감정 관련하여, 감정은 의료사건, 건설사건 등에서 필수적 절차로 이해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 감정이 매우 지연되어 절차가 공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정확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개진되어 왔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사실심 충실화 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

- 2015년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감

정절차 개선 방안 논의

-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 도출

● 사법정책연구원,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감정제도 등에 관한 위 연구 결과 도출
- 제도적 측면에서의 감정 제도 개선 방안과 운용 실태적 측면에서의 감정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제시

● 관련 제도 개선 논의 경과

- 검증 관련

- 2008. 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2008-2)』 제정·시행
- 2017. 4.경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요청이 「민사재판커뮤니티」에 제기됨
- 2018. 4.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검토

- 감정 관련

- 2017년 신체감정촉탁 병원 확대 및 감정료 인상
- 2019년 통합감정지원시스템 구축 및 의료감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 2020년 통합감정지원시스템 오픈 및 의료·손배 전담재판부와의 간담회 실시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감정 제도 개선 방안

-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감정인 선정 방안 및 1인 감정인 선정의 문제점 극복 방안, 감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부실 감정 및 감정 지연 방지 방안, 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등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제도 개선 방안

- 검증 여비 현실화, 원격 영상 검증 등 검증 방식의 다양화 방안 등
- 현행 검증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효율적인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의 중요성

- 2020년 선고 사건 중 전부무죄 비율은 2.56%에 불과 ⇨ 대부분의 사건에서 양형이 주된 쟁점

● 그럼에도 종래 재판실무에서의 양형심리는 소송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등 공판중심주의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전문적인 양형조사인력의 부족, 양형조사에 따른 심리기일 지연 우려, 양형심리 및 양형조사에 관한 관심 부족, 불리한 양형인자 현출 우려에 기인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법무부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원조사관 접견 불허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재판 당사자의 양형심리에 관한 절차적 불만족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한 양형판단이라는 실체적 측면과 함께 충실한 양형심리란 절차적 측면도 동시에 보장될 필요

● 양형기준의 정확하고 공정한 적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그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양형기준제 도입

- 사법개혁위원회에서 2004. 12. 양형기준제 도입 건의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 양형위원회 설립 등 건의

- 양형위원회 설립 및 권고적 양형기준제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2007. 4. 27. 설치

-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개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하여 2009. 7. 1.부터 시행 → 이후 다양한 범죄군에 관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 현재 제8기 양형위원회 활동 중

● 양형조사 관련 입법 추진 경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양형조사관의 양형자료조사 등 양형조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 마련하여 2006. 4. 국회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9. 2. 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법원조사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등에서 선발한 '양형조사위원'이 양형자료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3. 11.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 시행

- 2009. 7. 법원조직법 제54조의3 및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조사관 선발 후 양형조사 담당하도록 함(7개 법원 21명)
- 2012. 9.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핵심으로 하는 양형심리모델 정립하여 시행(향후 양형조사제도 입법 시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규칙에 포함될 절차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취지) → 2021년 19개 법원 112개 재판부에서 실시
- 2021. 9. 현재 21개 법원에서 45명의 법원조사관이 활동 중이고, 2022년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이 법원조사관으로 활동 예정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사건 유형에 따른 양형심리절차 정형화 방안 등 양형심리모델 개선방안

- 사건 유형(자백사건/부인사건, 중죄사건/경죄사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심리절차 모델의 제시 등 현행 양형심리모델의 개선 및 구체화 방안
- 개선된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실시할 양형전담재판부 또는 양형심리책임재판부 설치·운영방안

● 법원조사관에 의한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양형조사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 양형조사관의 전문성 확충 방안
- 양형조사로 인한 심리기일 지연 방지 방안(피고인 제출 의견서, 변호인 제출 준비서면 등을 활용한 조기 양형조사명령의 활성화 등)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1. 기존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가. 제1기

-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 순위
-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나. 제2기

-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
- ② 민사재판 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2. 제3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 논의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속심으로 이해됨(민사소송은 속심, 형사소송은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속심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속심제는, 복심제의 장점(항소심에서 추가로 사실심리를 할 수 있어서 오판을 방지하고 철저한 권리구제를 도모)과 사후심제의 장점(1심에서 이미 진행한 심리를 무의미하게 반복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적시에 권리를 구제)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현재는 복심제의 단점(1심에 버금가는 심리 기간의 장기화와 절차 지연), 사후심제의 단점(증거채택과 조사에 인색하다는 당사자의 불만, 높은 상고율 등)이 부각되고 있는바 속심제의 본래 모습에 부합하는 운영을 통하여 사실심을 충실화하면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지향점 도출

- 1심부터 경험이 많고 식견이 있는 다수의 단독판사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실심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분쟁을 1심 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해결함
- 항소심에서는 1심의 당부를 심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함
-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수행함

● 1999년 민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실제 입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항소심에서의 실권효 도입
- 항소이유의 법정,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 항소심의 1심 사실인정에의 기속

● 2007년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제126조의2 신설

- 신설된 규정(항소인의 준비서면 관련 규정)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2009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문 채택

〈건의문 중 일부〉

1. 장기적 지향점

- 장기적으로 제1심 강화, 제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그와 동시에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수준 높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결국, 제1심과 항소심의 강화 및 상고심의 기능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지향함

● 2015. 7. 전국 민사법관 포럼

- 대주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적 심리방안'

- 소주제 1: “심급구조 재설계를 위한 적정한 심리모델 개발”

- 소주제 2: “법정녹음 환경에서의 증거조사절차 개선”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바람직한 항소심의 기능 및 1심과 항소심의 역할 분담 논의

- 사실심 충실화, 분쟁의 조기 종국 및 바람직한 심급제도를 위한 1심과 항소심의 역할 분담 논의

●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단기 및 중·장기 개선 방안을 나누어 도출
- 현 제도 하에서 운영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 / 규칙이나 예규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 /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예시: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항소이유의 법정, 항소심에서의 실권효 도입, 항소심의 1심 사실인정에의 기속 등) 등을 나누어 도출

②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외국인·이주민 역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이주민의 언어적 한계,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절차에서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통역·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통역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음
 - 관련 언론 보도 등

- 2016. 2. 23. 언론 보도 [전문 법정 통역사가 필요해! - 말 안 통하는 외국인 재판]
- 2017. 11. 26. 언론 보도 「 [심층 기획-갈 길 먼 사법통역 ‘영터리 통역인’ 에 두 번 우는 난민들] 외
- 2018. 7. 11. 언론 보도 「지금 피고인한테 제대로 통역한 거 맞아요?」
- 2019. 2. 26. 언론 보도 「인생 걸린 문제, 영터리 통역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 2020. 3. 23. 언론 보도 「[인권친화 법원을 향해 ②]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외국인 통역도 부실」
- 2020. 12. 5. 언론 보도 「국적 따라 흔들리는 ‘사법 정의’ ... “아무도 미안하다 하지 않았다” 」

-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통·번역의 정확성 부족과 정확한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통·번역인의 확보의 어려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통·번역인 풀의 제한, 소수 언어 통·번역인 확보 시스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음

- 1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였는바, 사회적 약자 중 다른 그룹인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도 연구·검토의 필요성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사법정책자문위원회(2기)’ 논의 및 건의문

- 2013~2014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2기)’가 외국인·이주민 등에 대한 사법접근성 향상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건의문 채택(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정확한 통역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건의)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및 건의문

-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외국인·이주민 등의 사법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관한 건의문 채택(외국인·이주민 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적·물적 지원 강화하고, 법정통역인 인증제도 등 통역 시스템 개선 필요)

● 관련 제도 개선 논의 경과

- 통·번역인 지원 및 관리

- 2009년 법정 통역인 편람 발간 및 2016년 2020년 각 추가 발간
- 2013년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개정
- 2019년 전국 통·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 실시 및 인증자 명단 전국 법원 공유
- 2020년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개정으로 인증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 2020년 ~ 2021년 전국 법정 통·번역인 교육 실시(원격 영상 강의)

- 외국인·이주민 사법접근권 강화

- 2013. 1. 1. 외국인·이주민 전용 홈페이지(<http://jifi.scourt.go.kr>) 개설
-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설치
 - 2014년부터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우선적인 사법지원을 실시하는 창구인 우선지원창구 설치. 2018년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에 따라 2019년부터 사법접근센터 설치 중
 - 2021년까지 전국에 33개의 법원·지원에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 설치 (2021년 설치 예정 포함)

■ ‘외국인 전용창구’ 시범 운영

- 2014년부터 13개 법원에서 외국인 전용창구를 시범운영하여 현재 28개 법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와의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 추가 설치 보류 중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재판에서의 통·번역 시스템 개선 방안**

- 재판에서의 통·번역의 정확성 담보 방안(인증 통역인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대동 통역인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 검증 방안 등)
- 원격 통역 활용 방안(역량 있는 통역인과의 영상 연결을 통한 통역 등)
- 소수 언어 통·번역인 확보 방안

●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

- 관련 안내문 제공 및 민원실 등에 전국구 통역 콜센터 설치 방안 등
- 외부 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

③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형사 외 분야, 민사 및 행정 등)**

■ **논의의 필요성**

- 2008년 도입된 **형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경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민사 및 행정재판 등 **형사 이외의 재판에서도 전문지식보다 일반시민의 보편적인 법감정의 반영이 필요한 사건이 존재하는바, 형사 외의 재판에서도 적정한 사건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배심조정 실시 사례**

- 장흥지원에서 2006년부터 시작하여 여러 차례 배심조정을 실시한 사례 있음(지역 주민의 참여 희망을 받은 후 추천을 통하여 배심조정위원을 선정한 뒤 배심조정위원의 평의를 거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의 논의

- 2016년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에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조정권고안에 반영함으로써 조정권고에 권위와 신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 도출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논의

-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민사 국민참여재판 도입 검토 등’ 안건 의결, 건의문 채택

1.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민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사재판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들이 변론절차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참관한 후 평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의 **배심조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검토 필요 사항

● 형사 이외 분야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과 그 방안

-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여, 형사 외의 민사 및 행정 등 분야에서의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검토

● 현행법 하에서의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

- 현행법 하에서 형사 이외의 민사 및 행정 분야의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방안 검토
- 국민의 사법 참여가 적절한 대상 사건 검토(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 관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건,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 등)
- 소송 외의 조정 등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검토(배심조정 등)